

부**령**

●기획재정부령 제36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1	6909	19 90	담체(擔體) 또는 필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감소시키는 장치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세라믹, 코디어라이트(Cordierite),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de) 또는 알루미늄 티타네이트(Aluminium Titanate) 재료의 벌집형식인 것으로서 원통형 구조로 셀(Cell) 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10셀 이상이고, 셀 사이 벽의 두께가 0.8밀리미터 이하인 것 2.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속 재료의 원통형 구조인 것으로서 셀 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25셀 이상이고, 셀을 구성하는 금속의 두께가 0.4밀리미터 이하인 것
	8421	39		
2	8406	82	증기터빈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용 설비로서 발생동력이 4,000킬로와트(kW) 이상이거나 회전수가 분당 10,000회(rp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되, 부속기기를 포함한다.

3	8410	11	동력회수터빈	중질유탄황시설용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용 설비로서 에너지 최대 회수량이 10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8413	50	액체펌프	폐수처리시설용 · 연료유탄황시설용 · 수소제조시설용 · 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올레핀(Olefin) 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Alkylation) 공정 및 부속 황산재생 공정으로 한정한다] 설비로서 최대 유량(流量)이 시간당 10세제곱미터(m^3/h) 이상이거나 토출노즐의 안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8413	81	분사펌프 (Dosing Pump)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용으로서 공급압력이 최대 9바(Bar) 이상이고, 우레아(Urea)를 노즐로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8414	59	가스배송기	제철소의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코크스오븐가스(COG)를 배송하는 설비로서 처리용량이 시간당 70,000노말세제곱미터(Nm^3/h)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	8414	59	송풍기	중질유탄황시설용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용 설비로서 사용동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이거나 토출정압이 20,000엠엠에이큐지(mmAqG) 이상이고, 처리용량이 시간당 30,000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다단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	8414	80	과급기	자동차 유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엔진부품으로 터빈과 압축임펠러로 구성되고 기계식으로 흡입공기를 압축 및 공급하는 장치로서 엔진출력이 325마력(PS)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9	8414	80	기체압축기	연료유탄황시설용 · 수소제조시설용 · 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 설비로서 원심력 이용방식의 것으로서 격막(隔膜)이 장착된 다단식 압축방식이거나, 왕복동형으로서 사용동력이 1,40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되, 구동장치 및 부속기기를 포함한다.
10	8417	80	소각로 또는 가스연소로	대기오염방지시설용(탈취용을 포함한다)으로서 처리능력이 시간당 20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최고 처리온도가 섭씨 600도 이상이고 체류시간이 0.5초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8419	50 89	열교환기 또는 냉각기	폐수처리시설용 · 연료유탄황시설용 · 수소제조시설용 · 연료유분해시설용 · 올레핀제거시설용 또는 가스전환시설용 설비로서 브리취락형(Brech Lock Type)으로서 운전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kg/cm^2) 이상이거나, 에어핀형(Air Fin Type)으로서 내식성이 있는 강(鋼)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8419	89	반응기	수소제조시설용·연료유분해시설용·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 공정 및 부속 황산재생 공정으로 한정한다) 또는 방향족화합물 제거시설용으로서 유황 또는 왁스(Wax) 등 공해 유발 물질을 수소 또는 산소와 반응시킬 수 있고, 최고 반응 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이며, 최고 반응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8419	89	황회수설비	연료유탈황시설용·수소제조시설용·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으로서 황 회수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일체형의 것으로 한정하되, 폐열회수장치를 포함한다.
14	8421	21	여과기(청정기를포함한다) 또는 여과막	오수 또는 폐수 처리를 위한 0.4마이크로미터의 공극(孔隙)이 형성된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oly Vinylidene Fluoride) 재질의 친수성(親水性) 중공사막(中空絲膜)으로서 최대 인장하중이 250뉴턴(N) 이상이고, 1제곱미터 면적의 최대 여과능력이 시간당 30리터 이상이며, 물속에 담근[浸漬] 상태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흡인(吸引) 및 여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8421	21	삼상(三狀) 분리기 또는 분배기	오수 또는 폐수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Bio Gas) 또는 고형물을 분리 또는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일 처리용량이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6	8421	39	가스청정기	철강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00노말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7	8421	99	증류탑 또는 포집탑의 단(段, Tray) 또는 충전물(Packing)	연료유탈황시설용·수소제조시설용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용의 증류탑 또는 정류탑의 내부에 설치하여 증류 및 정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서 재질이 스테인레스강 또는 특수합금강으로 바깥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인 단(Tray)이거나 세트당 중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의 충전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8424	89	분사노즐(Dosing Nozzle)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용으로서 우레아(Urea)를 배기관에 분사하는 장치로 최대분사량이 시간당 7,000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9	8545	90	전해질 막-전극 집합체(MEA)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전해질 막과 집합한 장치로서 셀 최대출력이 셀당 0.27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9025 9032	90 90	배기온도센서 또는 배기가스 재순환 온도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용으로서 배출가스 온도측정 소자가 백금(Platinum)인 것 2.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용으로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지는 부(-) 특성의 온도계수를 가지는 것

21	9027	90	녹스센서 (Nox Sensor)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용으로서 배출가스 질소산화물(Nox)의 측정범위가 최대 1,500피피엠(pp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2	9032	89	엔진제어장치	엔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연료의 분사시기, 분사압력, 분사량 제어가 가능한 장치로 정규 사용전압이 12볼트 또는 24볼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2의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1	8479	89	수재설비	철강 제조 공정에서 선철(銑鐵) 제조 시 발생되는 슬래그(Slag)를 알갱이로 만드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2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8479	89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 재활용설비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를 자동이송·절단·분류·파쇄 및 중류 등의 공정 등을 거쳐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처리능력이 시간당 2,500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6개 품목 중 가스제거기와 증기분리기 등 29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기터빈과 동력회수터빈 등 7개 품목을 새로 관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령 제370호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